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98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김상욱 • 주진우 • 유영하

조지연 · 김선교 · 백종헌

박준태 • 서천호 • 성일종

김예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 할 때에 기준으로 삼는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보행안전시설물과 안내시설물 등 공공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손쉽게 이용하고 정보를 얻기에는 아직 사용자 중심의설계가 부족하고, 각 공공시설물마다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한계점이 있음.

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 인사업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관된 지 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약자가 공공시설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 제6조의2 및 제10조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제2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침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 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공공시설물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보건복지 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시설물등의 설치와 관리 등에 있어 제6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
	<u>♥</u>)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③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
	<u>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u>
<u>6.</u> (생 략)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6조의2(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
	침 마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공공시설물등을 안전하
	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
	인 지침을 보건복지부, 행정안
	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u>마련하여야 한다.</u>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	원칙)
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에 다	
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공공시설물등의 설치와 관리
	등에 있어 제6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
	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u>6.</u> (생 략)	<u>7.</u> (현행 제6호와 같음)